#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 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 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주)세븐하베스트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14017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02.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5.09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0(장안동, 4 층 2 호) (주)세븐하베스트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02-3446-1922 Fax: 02-3446-1926

7harvest@naver.com www.7sundae.com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3.08.27	2013.09.02	(주)세븐하베스트 사업자등록번호 206-86-81304 법인등록번호 110111-5213999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세븐하베스트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0(장안동, 4 층 2 호)		
<u></u> 특수관계인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역무원제권 (임원)	이성진(대표이사)	이성진	02-3446-1922	02-3446-1926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
 상 호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 또는 건물명 등을
영 포	OO 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66671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928390000
		자세한 내용은 ١-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원소통근함	_
0 日亚시	<b>○ 라동근함소대국</b> ®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7,603,367	5,337,959	2,265,408	7,802,010	305,953	45,598
2023년	4,747,730	2,249,714	2,498,015	8,879,301	399,568	244,645
2024년	6,094,844	3,376,893	2,717,951	8,930,706	345,913	224,267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서비	ΛIZ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성진	2013.08~현재	(주)세븐하베스트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역전 <b>ㅜ</b> (8 <i>)</i>	
2024년 12월 31일	1	_	6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 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원소 동근함</b> (상표권)	43 튜 	등록일	출원번호 4120150043044 등록번호 4103666710000	(수)세믄하베스트 	2026.07.25 (2026.07.25)
<b>※동근함순대국</b> ® (상표권)	43 뉴 	등록일	출원번호 4120140001226 등록번호 4102928390000	(주)세는하메스트 	2024.06.30 (2024.06.30)

<sup>\*</sup>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sup>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2014년 01년 27일
- 2.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세븐하베스트	통큰할매토종 순대국	이성진	2014.01~2014.04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9 길 36 (마장동, 안민빌딩 203 호)
(주)세븐하베스트	통큰할매토종 순대국	이성진	2014.04 ~2015.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0(장안동, 4 층 2 호)
(주)세븐하베스트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	이성진	2015.10~2017.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0(장안동, 4 층 2 호)
(주)세븐하베스트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 국	이성진	2017.04~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0(장안동, 4 층 2 호)

# 3.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업종

영업표지	업종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순대국	

# 4. 바로 전 3 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시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9	19	_	14	14	-	14	14	_
서울	2	2	_	1	1	-	1	1	_
부산	1	1	_	-	_	_	ı	_	_



		1			T			T	
대구	_	_	ı	_	-	-	_	-	_
인천	1	-	1	_	1	1	_	1	_
광주	_	-	-	_	_	-	_	-	_
대전	_	-	-	_	_	-	_	-	_
울산	1	1	1	1	1	1	1	1	_
세종	ı	-	1	_	I	ı	_	I	_
경기	4	4	-	2	2	-	2	2	_
강원	3	3	-	2	2	-	2	2	_
충북	I	-	ı	_	I	ı	_	I	_
충남	3	3	1	3	3	ı	3	3	_
전북	2	2	_	2	2	_	2	2	_
전남	1	1	_	1	1	_	1	1	_
경북	2	2	-	2	2	_	2	2	_
경남	-	-	-	_	_	-	-	_	_
제주		_	_	_	-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23	1	2	3	-	19
2023	19	-	_	5	-	14
2024	14	_	_	_	2	14

# 6.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산정기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2	2024년 평	균 매출액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백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1011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4	139,451	5,773	272,974	13,533	30,582	1,529	14곳 중 14 곳
서울	1	-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_	_	_	_	_	_	해당 없음
대구	_	_	_	_	_	_	_	해당 없음
인천	_	_	_	_	-	_	_	해당 없음
광주	_	_	_	_	_	_	_	해당 없음
대전	_	_	_	_	_	_	_	해당 없음
울산	1	_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	_	_	_	_	_	해당 없음
경기	2	-	_	_	_	_	_	5곳 미만
강원	2	_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_	-	_	_	_	_	_	해당 없음
충남	3	_	_	-	_	_	_	5곳 미만
전북	2	_	-	-	-	_	-	5곳 미만
전남	1	_	-	-	-	_	-	5곳 미만
경북	2	_	-	-	-	_	-	5곳 미만
경남	_	_	-	_	-	_	-	해당 없음
제주	_	_	_	_	_	_	_	해당 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위 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4곳) 중 (14곳)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 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



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4 곳	7 년 9 개월(2,825 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조전통명가 통 큰할매순대국]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A -1	=1=1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된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2,979	2,979	_	_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2,979	2,979	_	_
판촉비			_	_	_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5 조의 2 에 따라 귀하의 예치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연락처	마케팅부 02-3671-7332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사업자등록증상 상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 또는 가맹점 영업개시일 중 빠른 시점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비고
가맹비	550 만원	계약	-가입비(가맹비의 10%)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 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교육비	330 만원	. — .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반환조건: 가맹사업법 제 10 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음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됨

# 2) 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금	500 만원 (VAT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VAT포함)
합계	1,380만원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VAT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 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거래상대방)	금액 99 ㎡기준(약 30 평)	면적 3.3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9,570	319	_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인테리어	청러어레	5,940	198		_
내부소품	협력업체	330	11	당사의	_
간판	협력업체	528	해당없음	귀책사유가	_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1,595	53.2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_
초도물품 및 초도식자재	가맹본부	880	해당없음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_
POS	협력업체	297	해당없음		A/S 관리비자체부담
별도금액	협력업체 또는 자체조달	철거, 화장실, 냉 TV, 정수기, 간핀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①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m²당 (22만원, VAT포함)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 ③ 위 표의 주방설비/집기 비용은 당사가 제시하는 기본 설치 사양에 대한 금액으로서, 점포 면적의 가감에 따라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항목의 면적당 금액은 이 점을 참고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최소 점포 기준 <b>99 ㎡ 이상</b>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점포규모: 99 m²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u>1) 비용부담</u>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판촉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개선 시 당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 참고하시기 바랍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카드 매출액의 1.65%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의 바로 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차액가맹금은 추정치이며 가맹본부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이익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5-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금액에는 부동산 임차료, 가맹본부 조직 관리 및 운영, R&D개발비용, 각종 세금이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330 만원(VAT 포함)입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양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내에 가맹계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기존 가맹계약 상의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위 기간 내에 가맹계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가맹본부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영업표지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경영적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20 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합니다. 귀하는 영업표지가 변경된 이후부터는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없고, 기존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가맹점의 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교체·교환·철거하여야 합니다. 이전 영업표지의 철거 및신규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하기로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개점활동 지원비(330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5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330 만원, VAT 포함), 보증금(5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 국"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요품목이란 구입요구품목(강제, 권장 포함)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품목을 의미합 니다.



\*위 공급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제한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품 공급이 중단된 당사의 가맹점 또는 당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 03 참고)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5월만 HS HT	가맹본부	계열회사	
순대국을 판매하는 업종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가맹계약 시 귀하와 협의된 범위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

\*특수상권이란 강남역/홍대/명동/동성로/해운대 등에 준하는 대형상권,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지하철 및 철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 휴게소, 관광지, 종합병원, 공항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 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 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 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 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고객니즈 반영,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성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 포함)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판매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고객니즈 반영,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성에 따라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 포함)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2024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 6. 계약기간.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 입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 2)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5-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제 1 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제 6 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① 인/허가 취득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③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④ 메뉴판 매의 제한 ⑤ 가격결정의 제한 ⑥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⑦ 유니폼 착용 ® 광고 및 판촉 ⑨ 경업금지 ⑩ 상품공급의 중단 ⑪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 3. 제 7 조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4. 제 8 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5. 제 9 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6. 제 14 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7. 제 18 조 제 2 항 "을"의 요건 변동 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8."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9.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10.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 부재료 등의 공급, 약정한 경영지원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 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사 유 발생 시에는 귀하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3 개월 전)  $\rightarrow$  양도인 면담  $\rightarrow$  승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rightarrow$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rightarrow$  양수인 교육 $\rightarrow$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도의 확정'전까지 양도인은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채무(물품대금·로열티 등의 미납금) 및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을 가맹본부에 모두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한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가맹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당사와 동종의 직영점 또는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기타 양수인이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을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약정한 계약기간 내 및 계약해지 또는 종료 후 1년	순대국을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044171	ムマロミ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24시간	연중무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	S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주간 5명	야간 4명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광고 	브랜드광고 전국 브랜드 광고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50%	50%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 광고 시행(전체 가맹점사업자 참여)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 → 판촉 시행(전체 가맹점사업자 참여) 단, 동의율 70% 미만 시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판촉 시 행
	개별판촉	_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 13 조 1 항 및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10 만원 )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의 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초 가맹금을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그 나머지를 귀하에게 반환합니다.

해약요청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한 24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	200 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맹점 개점 전까지	300 만원
개점 관련 발생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책 당사자는 그 상대 방에게 위약벌[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9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2,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자점매입하여 메뉴로 판매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300 만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⑧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와 정보공개서에 임원으로 기재된 자를 뜻합니다.
- ⑩ 귀하 또는 귀하의 종업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당사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42~47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일 (정보공개서	
사업설명, 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의 경우, 변호사or가맹거 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2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1. 영업개시 이전의 구남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수	공사 실시	20일	
교육실시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6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당일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기타 시장상황 등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자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 업법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 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개선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 성이 의 객인 우 ( 대인점 개터한 ▶ 안이 준로 가통지거 인현을 우 의 내 등 가로 경 한 에 산의 이 사이의 가장에 지경 보으로 보고 하다면 하다는 이 사이의 하다면 하는 바이에 가장에 지경 등 하는 이 바이에 되었다. 등 가장에 되었다. 등 하는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 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의 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액을 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무대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점선성 3 가책 사약(지포경본액기례담급니이한는능환로이내위의 유이약업되가부장에는은지거지우수대의 양한 이 부 중에는은지거지우수 하나는 지하다 하는 경환 하는 맹담여 하는 나 급에 가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하는 이 나 나는 하는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원조전통명가 통큰할매순대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전조 형이 힘에 번도		330만원	필수 교육
(개점 전)	개점 전 조리/ 서비스 교육	(지정 교육장)	(점주 협의 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VAT포함)	필수 교육
신메뉴 교육 (개점 후)	메뉴 조리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개발 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 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_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VAT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별첨01. 재무제표(2022~2024)

















별첨02.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리스트

1. 구입강제품목: 거래상대방(공급업체) 강제; 반드시 아래 표의 거래상대방(공급업체)으로 부터만 공급받아야 함

2025.04. 기준



2. 구입권장품목: 거래상대방(공급업체) 권장; 품목명, 제조사, 규격 등은 아래 표와 동일한 물품으로 사용하여야 함

2025.04. 기준



#### 3.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에 대한 확인 및 동의사항

#### ① 구입강제품목 지정사유

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갑"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갑" 및 "갑"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 ②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결정기준

1번~17번: 가맹본부가 매입한 가격에 가맹본부가 책정한 마진율을 더하여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됨. 공급가격 변경은 연 4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30% 이내로 함

18번: POS회사가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공급조건 등 구체적인 조건은 POS회사와의 별도계약에 따름

19번: 실측, 내부설비도면 제공 및 인테리어 시공 중 방문 기획관리

#### ③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변경사유 및 주기

각 구입강제품목당 분기별 1회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입권장품목의 변경 및 **④**에 서 규정한 예외사유, 오기정정의 경우 본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예외사유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통제불가능한 사유(불가항력)로 인한 수급불안정, 물가나유통가격의 상승, 원물(육류 및 부속물, 밀가루, 식용유, 기타 이에 준하는 원부재료 등)의가격 상승,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필수품목(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리스트의 공급품목,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주기에 대한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이 경우 "갑"은 기존의 공급품목,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주기 기준에 따르지 않고 달리 정하여 "을"에게 통지할 수 있고, "갑"이 최종 통지한 내용이통지 즉시 본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⑤ 필수품목리스트 변경 통지 및 통지된 내용 가맹계약 내용에 포함 확인

필수품목은 시장상황, 신메뉴 출시, 기존 메뉴 철수 등 "갑"의 사업방침에 따라 공급내역,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구입강제품목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진행하며, 변경 시 "갑"이 정한 관리앱(프로그램), 서면 통지(전자문서 포함), POS, 이메일, "갑"의 직원이 가맹점에 방문하여 별도 통지, ERP 공지사항 안내, 인트라넷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이에 준하는 기타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을"에게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갑"이 최종 통지한 필수품목리스트가 통지 즉시 본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된다.

# 4.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상품, 용역 등의 공급 가격 결정 및 지급에 대한 확인 및 동의

"갑" 및 "갑"이 지정한 사업자가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 상품, 용역 등의 공급가격은 차 액가맹금, 판매수수료 등 "갑"의 마진이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된다. "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본 계약기간 동안 이와 같은 구조로 책정된 공급가격 및 지급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한다. 한편, 정보공개서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2.영업 중의 부담-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항목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영업 중의 부담이라는 목차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점 후", "영업 중"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한 차액가맹금 추정치를 토대로 산출된 금액이고, 추정치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개점 전"에 공급한 인테리어, 간판/사인물, 가구, 설비/집기, 초도물품 등에 대한 차액가맹금은 위 지급금액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어 있



<u>다는 점을 확인 및 동의한다.</u>		
	가맹점사업자 본인 성명:	(인)



#### 별첨03. 메뉴 및 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메뉴 및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신메뉴 추가, 변경, 삭제 등) 시 가맹점사업 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메뉴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해당 메뉴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본부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b>전화번호</b>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1012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세븐하베스트 (인)



#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가맹희망자 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b>전화번호</b>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1012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세븐하베스트 (인)